

부천시폐기물관리예안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11. 28.

다. 상정일자 : '94. 12. 13.

라. 의결일자 : '94. 12. 1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나. 내 용 :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95.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부천시 조례를 모범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 제25조 제1항 규정에 채권보증을 임의 규정으로 만든 사유는?	○ 임의 규정으로 만든 것은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을 선납제로 함에 있어 여의치 못할 경우 판매업자들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현 개정조례안으로 가결

나. 찬성토론 : 현 개정조례안으로 시행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업 업자들의 채납발생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시킴이 타당.

5. 수정안내용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업자들로부터 보험증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채납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줌으로 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이 타당.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예대한수정안

의안번호	328
의 결	94. 12. 21
년 월 일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2. 13

제 출 자 : 사회사업위원회

□ 수정이유

-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 판매대금의 채권보중에 있어,
- 현행 조례에는 채권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판매업자는 1개월 매출분의 금액을 1년 기한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게 함으로써,
- 규격 봉투로 인한 채납을 사전에 없애고 판매업자의 무단전출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2. 주요골자

- 조례 제25조 제1항의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강제규정 신설

신설내용 : “판매업자는 1개월 매출분의 금액을 1년 기한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한다.”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개정조레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를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시장은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2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판매업자는 1개월 매출분의 금액을 1년 기한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 (판매소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봉투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신설)	제25조 (판매소지정) ① ----- ----- -----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1개월 매출분의 금액을 1년 기한으로 보증보험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8
------	-----

제출년월일 : 1994. 12. 2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고 '95. 1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부천시 조례를 모범인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종량제 실시예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조항 삭제함.
- 용어의 정의 세분화 구분 (안 제2조)

-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토록 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등의 용어 세분화 구분 (안 제7조)
-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쓰레기 봉투의 용도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1조)
- 수수료의 감면 (안 제22조)
- 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안 제24조)
- 판매소 지정,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폐지함.

[수정안 포함]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타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 실시계획을 수립,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 (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친시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등)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건축폐기물은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 건축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철거

이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3.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분리보관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전담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⑤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쓰레기봉투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들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 건축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반폐기물 배출량을 참작하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들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상차하거나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에 갖다 놓으면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3 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나. 대행기간

다. 대행수수료

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마.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계획서

바.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천시외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15 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 16 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규격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과 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용기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 17 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부천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 18 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제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다량일반폐기물 수수료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원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 20 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에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 톤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 24 조 (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대금을 선납으로 하며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1개월 매출분의 금액을 1년 기한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 26 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 27 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4.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5.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

제 28 조 (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판매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 29 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이 조례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품목및수수료기준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냉 장 고	500 이상	8,000
	300 이상	6,000
	300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애 어 콘	264m ² 형 이상	8,000
	66m ² 형 이상	5,000
	66m ² 형 미만	3,000
가 스 오 븐 렌 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5,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0,000
	그 렌 드	15,000
기 타 (자전거, 선풍기, 의자, 쌀통 생크대 이와 유사한 물건)	개 당	2,000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종이컵,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닝표지,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알루미늄캔 (음식용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것. ※ 맥주,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철류	- 고 철 (공 기 구, 철 사, 못, 철판 등 쇠 불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용기류는 제외

[별표 3]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기 및 두께

구 분	봉투용량 ()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호칭두께 (mm)
일 반 용	10	33×40	0.020
일 반 용	20	41×49	0.025
공 공 용	50	56×67	0.030
일 반 용	100	71×85	0.040

(비고)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 (cm)} = \frac{\text{가로길이 (cm)}}{\pi} + 5\text{cm}$$

[별표 4]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부천시○○구청장

연락처 : 부천시 ○○구 청소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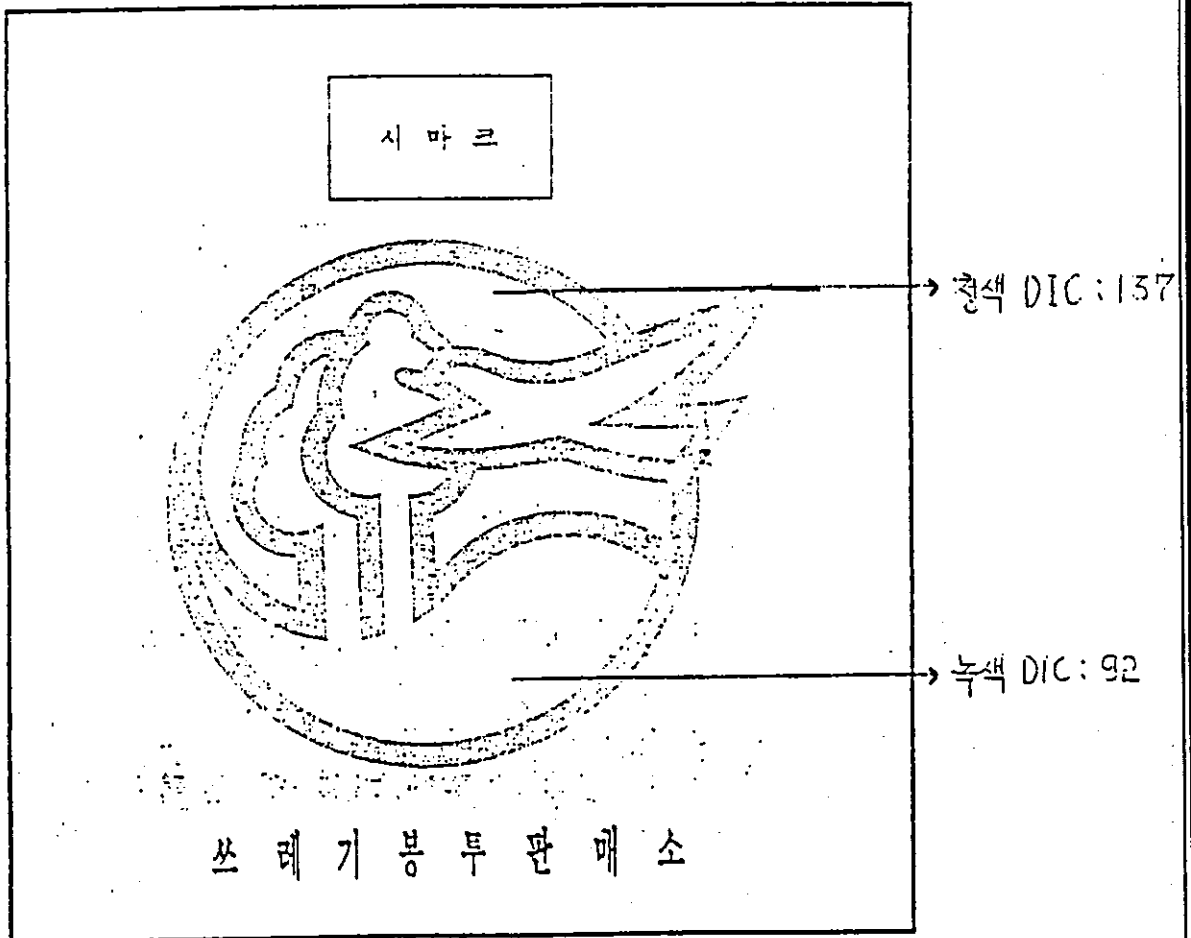
연락처 : 부천시 ○○구 청소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5]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용 량 별	용 도 별	일 반 용 봉 투	공 공 용 봉 투
10	일 반 용	180	"
20	일 반 용	340	"
50	일 반 용	830	"
100	일 반 용	1,660	"

※ 공공용 봉투는 구청에서 무료로 배부함.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 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록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당해년도 수집·운반·처리기준은 전년도 시·구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2.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집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 연도별 자립도 적용비율

연도별 용량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적용비	40%	50%	60%	70%	80%	90%	100%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 수수료자립도 × 0.09로 산정함.

5.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별표 7]

다량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대 상	기 준	치 리 수 수 료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다량일반폐기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체,백화점 등 대형상가, 기업체 등)	론당	54,600	45,900	8,700
건축폐기물	론당	18,000	10,000	8,000